

의안 번호	1899	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1. 28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1. 28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2. 8.(화)

2. 제안이유

- 2021. 12. 16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개정
- 나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조⇒ 제10조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0조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,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큰 거 법 규

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10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)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·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·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. 다만,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. 다만,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. 다만,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